

의안 번호	2507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25. 11. 11.(화)
-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11.(화)
-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4.(목)

2. 제안이유

- 식품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현황

(단위: 천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조성액		
296,637	93,024	100,200	△7,176	289,461	

나. 수입계획 : 93,024천원

(단위: 천원)

편성목	산출내역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계	93,024	91,376	1,648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24	6,376	16,648
231-01	과징금 수입	50,000	70,000	△20,000
521-01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시 보조금	20,000	15,000	5,000

다. 지출계획 : 100,200천원

(단위: 천원)

세부사업	편성목	세 부 내 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100,200	77,460	22,740
식품 안전관리 지원사업	201-01	음식점 QR오더 설치 및 유지관리비 지원	5,000	0	5,000
		음식문화개선 등 홍보물 제작	2,000	2,000	0
		동네제과점 종이봉투 제작·배부	4,000	4,000	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700	560	140
	201-0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 가입	1,500	1,500	0
	201-03	제과점 영업자 신기술 교육	3,000	0	3,000
	301-14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8,400	8,400	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2,600	0	12,600
307-02	미식대향연축제 지원	3,000	3,000	0	
음식문화 개선지원	301-14	외식업소 위생·방역서비스 지원 사업	40,000	30,000	10,000
기타지출	308-14	과징금 시 귀속분	20,000	28,000	△8,000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3조
- 「식품위생법」 제89조
-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6조

5. 검토의견

-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으로
- 2026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29,370천원이 감액된 389,66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수입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예치금 회수 31,018천원 감액,

과징금 수입 20,000천원 감액

음식문화 개선 지원 시 보조금 5,000천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16,648천원 증액으로 전년대비 29,370천원

감액편성 되었음

- 지출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예치금인 보전지출은 52,110천원 감액

식품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20,740천원 증액

음식문화개선 지원 사업에 10,000천원 증액

과징금 징수분의 시 귀속분 8,000천원 감액으로 전년대비 29,370천원

감액편성 되었음

-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에 편성되어 운용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 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